제316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서산시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서산시장 제출 (의안번호 제65호)

2026. 10.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전 문 위 원

〈서산시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Ⅰ.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65호

○ 제 출 자 : 서산시장

○ 발의일자 : 2026년 10월 8일

○ 회부일자 : 2026년 10월 13일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 민간단체 및 독서동아리 등의 독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경비 지원방식에서 도서 등 물품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다양한 지원방식을 통해 독서문화 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간단체 및 독서동아리 등의 독서활동 지원 범위를 경비 및 물품지원으로 확대 (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독서문화진흥법」

「서산시 독서 문화 진흥 조례」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Ⅲ. 검토의견

1. 개정목적

○ 본 개정안은 독서 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및 독서동아리 등의 활동에 대한 지원방식을 기존의 경비 지원에서 도서 등 물품 지원까지 확대하여 독서 활동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법적 근거

-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같은법 제9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 주민의 독서 생활화를 위해 필요한 독서시설 마련 등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민간 단체 및 독서동아리 등에 독서 활동을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정책은「독서문화진흥법」의 입법목적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 본 개정안은「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독서문화 진흥 책무를 구체화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독서문화 진흥 사업의 지원 근거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사료됨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지역의 독서 문화 진흥)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주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 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나. 민간단체 및 독서동아리 등의 지원범위 확대 (안 제5조제3항)

- 개정안 요지 : 독서 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또는 동아리 등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요한 경비'에 더하여 '물품'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방식을 확대하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사항임

- 개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독서 문화 진흥) ①·② (생략)	제5조(독서 문화 진흥)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독서 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또는 동아리 등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③ ---------- ---------- ---------- ---------- 경비 및 물품의 지원과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 검토의견 : 민간단체 및 독서동아리 등의 독서활동에 대한 지원방식을 ‘경비’에서 ‘경비 및 물품’으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독서활동에 필요한 도서 및 관련 자료 등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독서문화진흥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독서생활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원사업의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는 것은 상위법령의 취지와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5. 종합검토의견

가. 본 개정안은 민간단체 및 독서동아리 등의 독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경비 중심의 지원방식에서 경비 및 물품 지원방식으로 확대코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나.「독서문화진흥법」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 같은법 제9조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주민의 독서 생활화를 위해 독서 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민간단체 및 독서동아리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조례에 마련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취지와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라. 특히 도서 등의 물품은 독서동아리 및 민간단체의 독서활동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현행의 경비 지원에 물품 지원을 추가하는 것은 지원방식을 현실화하고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마.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